

퇴직연금 바로알기!

Q&A

Q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입니다. 전세금을 올려줘야 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합니다.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할까요?

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. 2016년부터 무주택자인 확정기여형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에 따른 보증금을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. 단,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제한됩니다.



Q 연금을 받으려면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. 연금수령 요건은 무엇인가요?

'DB형/DC형/기업형IRP'의 경우 55세 이상,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지급기간 5년 이상을 선택할 경우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. 개인형 IRP의 경우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55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며, 연금지급기간은 5년 이상을 선택해야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.



Q 연금계좌의 가입자 사망 후 상속인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?

네, 그렇습니다. 상속인이 연금계좌를 승계하겠다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신청을 하면 됩니다. 단, 연금계좌를 승계하고자 하는 배우자가 55세 이후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. 또한, 연금 개시 전 배우자가 승계하는 경우 과세이연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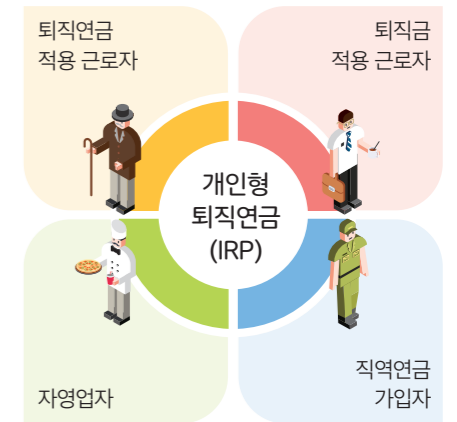
2017 퇴직연금 세제 혜택 안내



발행 : 근로복지연구원 전화 : 02-2670-0471

개인형퇴직연금(IRP) 가입대상 확대!

2017년 7월 26일부터 모든 취업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



- 기존 개인형퇴직연금(IRP) 가입대상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.
- 하지만, 2017년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시행령 개정으로 자영업자, 퇴직금 제도 적용 근로자, 지역연금 가입자 등 사실상 모든 취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'1석 2조', 개인형퇴직연금(IRP)에 저축하기!

개인형퇴직연금(IRP)에 미리미리 저축해서 노후자금 마련하고, 최대 연 700만원(연금계좌 400만원 포함) 세액공제 받아요.



든든한 노후,
퇴직연금이
현명한 선택입니다.

퇴직연금제도는

- 1 부담금 납입
- 2 적립금 운용
- 3 연금 수령

모든 단계마다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

“ 퇴직연금제도는 부담금 납입분, 적립금 운용 수익에 대해서 세금 부과를 미루었다가, 연금으로 수령할 때 낮은 세금을 부과합니다. ”

부담금 납입

- 사용자의 부담금은 전액 손비로 인정합니다.
- 근로자가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로 납입하는 금액은 최대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.

적립금 투자·운용

- 확정기여형(DC)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(IRP)의 경우, 발생하는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가 연금수령 전까지 미뤄집니다.

연금 수령

- 퇴직연금은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(55세 이후)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- 연금으로 받는 경우 일시금 수령에 비해 30%의 세금이 절약됩니다.

퇴직연금,
세제 혜택 놓치지 마세요!

혜택 1.

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, 개인형 IRP에 추가 적립하고 세액공제 받아요!

연봉 5,500만원 이하인 박대리가,
개인형 IRP에 연 700만원을 저축하면,
세액공제율 16.5%를 적용 받아,



연말정산 시 최대 115만 5천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.

※ 총급여 5,500만원(종합소득 4천만원)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13.2% 세율 적용

세액공제를 최대한 받는 방법은?

연금계좌(연금저축+퇴직연금) 연 400만원 한도에,
퇴직연금은 연 300만원 추가하여 총 700만원 세액공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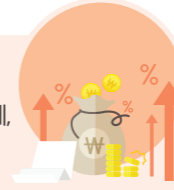
(단위: 만원)

구분	연금저축	퇴직연금	세액공제 한도
Case1	0	700	700
Case2	100	600	700
Case3	200	500	700
Case4	300	400	700
Case5	400	300	700
Case6	500	200	600
Case7	700	0	400

혜택 2.

목돈이 필요할 때 생각나는 퇴직연금, 미래의 나에게 양보하세요!

퇴직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은
수령할 때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,
이자소득세 15.4% 미부과



운용 수익에 부과되는
이자소득세 15.4% 만큼 재투자 할 수 있습니다.

중도인출, 한번 더 생각해봐요!!

☞ 퇴직연금은 적립과 운용 단계에서 세제 혜택이 많은 만큼, '연금'으로 수령하지 않고, '연금외수령'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세금이 무거워집니다.

☞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세가 적용되며, 세액공제를 받은 추가납입금은 기타 소득세 16.5%가 적용됩니다.

☞ 또한, 퇴직급여와 추가납입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 16.5%가 적용됩니다.

혜택 3.

연금으로 수령하면,
일시금 대비 최대 30% 절세 가능해요!

퇴직금이 1억, 실효세율이 4%*인 근로자가
퇴직급여 수령시, 세금기준으로
일시금 400만원 -> 연금 280만원



연금 수령을 선택할 경우, 일시금을 선택할 때보다
120만원의 세금 절약

*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효세율을 4%로 단순화하였습니다.

퇴직금을 '현금'으로 받았을 경우, 세금 절약 방법

- STEP 1 퇴직금 '수령 60일 이내'에 <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>을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IRP계좌 개설
- STEP 2 IRP계좌에 퇴직금 이체
- STEP 3 원천징수한 '퇴직소득세'는 확인절차 후 회사가 IRP계좌로 입금

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(IRP)으로 이체하고,
연금 수령을 신청하면 기존 세金的 30% 절감

